
I. 테마진단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

이정희 연구위원, 김세중 선임연구원

1. 문제제기

소득공제금액 한도 상향 조정과 무배당상품 허용을 계기로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층별 가입률 분석을 통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마케팅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 연금저축 상품은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 연금저축(이하 “구 개인연금”으로 칭함.)과 2001년 이후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이하 “신 개인연금”으로 칭함.)이 있음¹⁾.

○ 구 개인연금은 납입액의 40%(한도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수령 시 비과세하는 상품인데 비해, 신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한도를 불입액의 100%(한도 300만 원)로 확대하는 대신 연금수령 시 과세하는 상품임.

- 이들 상품은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함.

- 상품 가입 후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함.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금저축 상품은 정부에서 세제혜택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연금 형태의 수령을 준의무화(quasi-mandatory)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볼 수 있음.

1) 해당 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시행령 제80조(연금저축)임.

〈표 1〉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종류 및 특징

구 분	구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	신 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까지	2001.1.1 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기간	10년 이상	10년 이상
공제자	근로자 본인에 한정	근로자 본인에 한정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 원	분기당 300만 원(2011부터 400만 원)
소득공제비율	납입액의 40%	납입액의 100%
소득공제한도	연 72만 원 (납입액 기준 18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납입액과 합산(2011부터 400만 원으로 확대)
중도 해지 시 패널티	5년 이내 해지 시 가입일부터 중도해지일까지 납입액의 4% 추징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원천 징수
지급 방식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연금수령 시 과세	비과세	연금소득세(5%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적용), 총연금액 6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판매 금융기관	은행·투신사 신탁상품, 보험회사, 우체국, 농수협공제	은행·투신사 신탁상품,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수협공제, 증권투자회사

자료 : 국세청(2011.1.12), 『2010 근로자와 세금』,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수정 작성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전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높고, 최근 들어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2008년 기준 전체 적립금 중 보험회사 비중이 69%(생명보험 : 53.0%, 손해보험 : 15.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²⁾.

○ FY2009 기준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4조 9천억 원(생명보험 : 3조 1천억 원, 손해보험 :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FY2007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높지 않은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20~3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2) 이순재·김현수(2009)에 의하면 전체 적립금 중 개별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회사, 은행,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순으로 추정됨.

〈표 2〉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생명보험회사	25,023	28,516	30,265	31,018
증감률	21.1	14.0	6.1	2.5
손해보험회사	7,975	9,994	12,853	17,841
증감률	14.3	25.3	28.6	38.8

자료 :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1년부터는 신 개인연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잠재적인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33.3%까지 늘어남에 따라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니즈가 발생하고, 기존 가입자들도 가입금액을 최대 한도까지 높이려는 증액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3〉 신 개인연금의 납입한도 증대에 따른 최대 소득공제금액 변화

(단위 : %, 천 원)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주민세)	최대 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금액 증가율
		300만 원	400만 원	
1,200만 원 미만	6.6	198	264	33.3
1,200~4,600만 원	16.5	495	660	33.3
4,600~8,800만 원	26.4	792	1,056	33.3
8,800만 원 초과	38.5	1,155	1,540	33.3

■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소득공제한도 확대와 함께 무배당상품의 판매도 허용³⁾됨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판매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기존에는 유배당으로만 신 개인연금 상품을 개발하도록 규제하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상품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⁴⁾.
- 소득공제한도 확대와 무배당상품 허용을 계기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신 개인연금 상품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금융위원회(2010.12.14)

4) 유배당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은 주주 10%, 계약자 90%인데 비해 무배당상품의 수익은 전액(100%) 주주에게 귀속됨.

- 본고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잠재 시장 발굴 및 목표 고객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세통계연보에 발표된 2006~2009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입자 현황을 과세대상자 기준으로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살펴볼 것임.

2.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 현황

2009년 기준 신 개인연금 상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11.4%, 과세대상자 대비 19.0%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공제금액도 300만 원 한도에 미달하는 22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신 개인연금 상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가. 가입자 규모 및 가입률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⁵⁾의 가입자 규모는 2006년 1,709천 명에서 2009년에 2,114천 명으로 증가하여 2007~2009년 연평균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2000년까지만 허용된 구 개인연금 가입자 규모는 2006년 739천 명에서 연평균 10% 이상 감소하여 2009년에는 489천 명으로 축소됨.
- 반면, 2001년부터 판매된 신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6년 971천 명에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2009년에는 1,624천 명으로 확대됨.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기준 13~14%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 개인연금 가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 중지된 구 개인연금 가입률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임(〈표 4〉 참조).

- 구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6년 5.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에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반면, 신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6년 7.7%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9년에는 11.4%로 높아짐(〈그림 1〉 참조).

5)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을 모두 포함한 것임.

■ 전체 근로자 중 과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가입률을 산출하면 25%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구 개인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신 개인연금 가입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임(〈그림 1〉 참조).

○ 구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6년 11.2%에서 2009년 5.7%로 감소하였으나, 신 개인연금 가입률은 동 기간 14.7%에서 19.0%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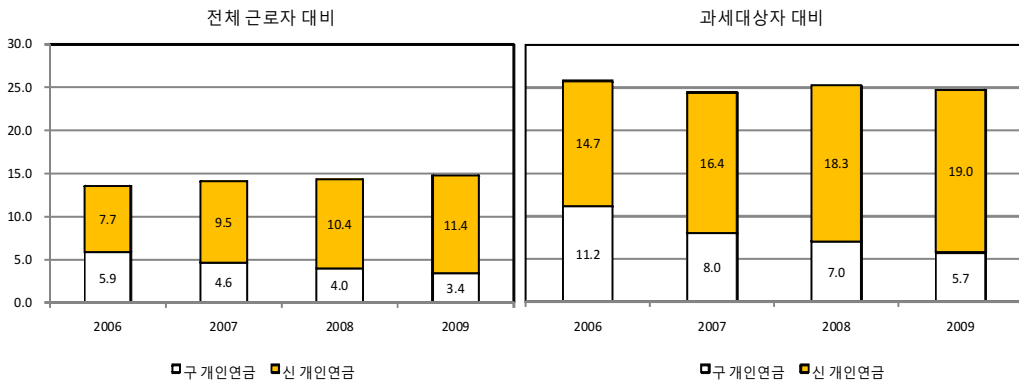
〈표 4〉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구 개인연금 가입자(A)	739	619	558	489
증감률	-	-16.2	-9.9	-12.3
신 개인연금 가입자(B)	971	1,274	1,459	1,624
증감률	-	31.2	14.5	11.3
계(C=A+B)	1,709	1,893	2,017	2,114
증감률	-	10.7	6.6	4.8
전체 근로자	12,595	13,376	14,046	14,295
증감률	-	6.2	5.0	1.8
과세대상 근로자	6,621	7,749	7,981	8,541
증감률	-	17.0	3.0	7.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그림 1〉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추이



나. 1인당 소득공제금액 추이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으로 근로자 1인당 공제받은 소득금액 규모는 2006년 2,490천 원에서 2009년에는 2,657천 원으로 소폭 높아졌으나, 최대 공제한도를 채우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구 개인연금의 최대 공제한도는 72만 원인데 비해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최대 금액 대비 67%에 불과한 48만 원에 그침.
- 신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2006년부터 공제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은 평균 금액은 최대 한도 대비 73%에 불과한 220만 원으로 나타남.

〈표 5〉 1인당 소득공제금액 추이

(단위 : 천 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구 개인연금 가입자(A)	471	476	492	479
신 개인연금 가입자(B)	2,019	2,132	2,154	2,178
합계(C=A+B)	2,490	2,609	2,646	2,65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3. 과세대상자 기준 신 개인연금 상품 가입률⁶⁾

과세대상자 기준 신 개인연금 가입률은 40대가 25.0%로 가장 높고, 30세 미만은 13.4%에 불과함.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가입률과 소득공제금액도 높아져 중상소득층 중심으로 동 상품이 활용되고 있으며, 중저소득층인 4천만 원 미만 계층의 가입률은 2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가. 성별 · 연령별 가입률

■ 과세대상자 기준 신 개인연금 상품 가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2007년 이후에는 남자 가입률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6) 구 개인연금 상품은 판매 중단되어 신 개인연금 상품을 대상으로 분석함.

- 남자 근로자의 가입률은 2006년 14.1%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1.9%p씩 상승하여 2009년에는 19.9%로 높아짐.
- 여자 근로자의 가입률은 2006년에는 16.1%로 남자보다 높았으나 이후 연평균 상승 폭이 0.3%에 불과하여 2009년에도 17.1% 수준에 머물렀음.
- 2009년 기준 가입자 규모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167천 명인데 비해 여자는 남자의 39%에 불과한 458천 명임.

<표 6> 성별 가입률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남자	신 개인연금 가입자	692	916	1,050	1,167
	과세대상자	4,888	5,484	5,629	5,857
	가입률	14.1	16.7	18.7	19.9
여자	신 개인연금 가입자	279	357	409	458
	과세대상자	1,731	2,263	2,351	2,682
	가입률	16.1	15.8	17.4	17.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 연령별 가입률 추이를 보면, 전연령 계층에서 가입률이 높아졌으나 40대 계층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증가 폭도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가입률 수준은 40대 25.0%, 50대 20.3%, 30대 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은 13.4%로 낮고, 60세 이상은 3.9%에 불과함.
- 가입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연령계층은 40대로 연평균 2.0%p 높아졌으며, 50대에서도 연평균 1.9%p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신 개인연금 상품은 소득수준이 높아 공제 효과가 크고 노후소득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40~50대 중장년층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20대 계층에서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신 개인연금 상품 활용도가 40~50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연령별 가입률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30세 미만	신 개인연금 가입자	203	250	236	246
	과세대상자	1,726	2,090	1,785	1,839
	가입률	11.8	11.9	13.2	13.4
30~39세	신 개인연금 가입자	340	447	495	549
	과세대상자	2,355	2,639	2,690	2,804
	가입률	14.4	17.0	18.4	19.6
40~49세	신 개인연금 가입자	320	427	500	556
	과세대상자	1,685	1,920	2,091	2,228
	가입률	19.0	22.2	23.9	25.0
50~59세	신 개인연금 가입자	104	145	216	258
	과세대상자	719	900	1,116	1,274
	가입률	14.5	16.1	19.3	20.3
60세 이상	신 개인연금 가입자	3	5	12	15
	과세대상자	134	198	298	395
	가입률	2.6	2.7	4.0	3.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나. 소득계층별 가입률

■ 소득계층별 가입률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입률도 높아져 중상소득층을 중심으로 신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천만 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은 4%대에 불과하며, 2천만 원~4천만 원 계층의 가입률도 25.2%에 머문 반면, 8천만 원~1억 원 계층의 가입률은 6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억 원 미만까지는 근로소득금액 구간이 높아질수록 연금저축 가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억 원을 초과하면 가입률이 소폭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 2006~2009년 동안 가입률이 가장 많이 향상된 구간은 6천만 원~8천만 원 계층으로 연평균 5.0%p 정도 높아졌으며 그 다음이 4천만 원~6천만 원 계층으로 연평균 4.7%p 높아짐.

○ 이에 비해 2천만 원~4천만 원 계층과 2천만 원 미만 계층의 연평균 가입률 증가 폭은 각각 2.7%p, 0.3%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근로소득금액별 가입률 추이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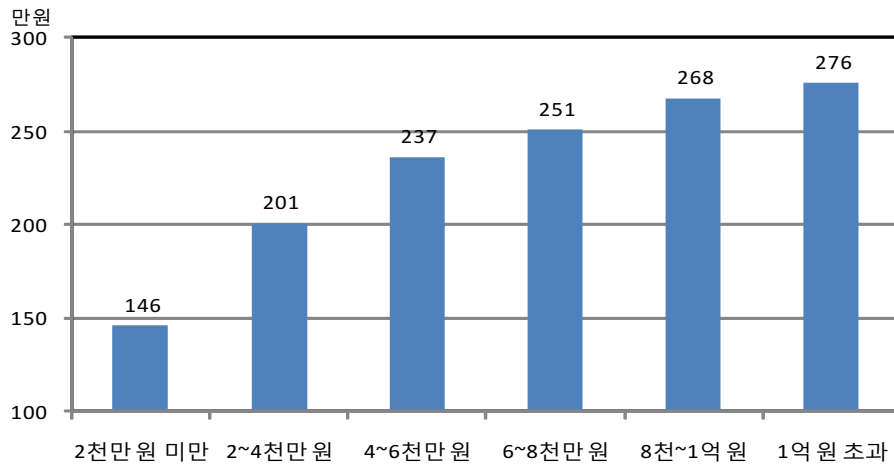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천만 원 미만	신 개인연금 가입자	105	167	185	192
	과세대상자	3,020	4,212	4,173	4,498
	가입률	3.5	4.0	4.4	4.3
2천만 원~4천만 원	신 개인연금 가입자	377	501	541	589
	과세대상자	2,226	2,183	2,243	2,341
	가입률	16.9	22.9	24.1	25.2
4천만 원~6천만 원	신 개인연금 가입자	290	366	426	494
	과세대상자	930	899	1,002	1,091
	가입률	31.2	40.7	42.5	45.3
6천만 원~8천만 원	신 개인연금 가입자	111	138	182	213
	과세대상자	265	267	338	374
	가입률	41.9	51.6	53.8	57.0
8천만 원~1억 원	신 개인연금 가입자	48	54	69	75
	과세대상자	96	96	118	125
	가입률	50.4	56.7	58.3	60.3
1억 원 초과	신 개인연금 가입자	39	48	56	61
	과세대상자	84	92	107	113
	가입률	47.0	51.7	52.9	54.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 금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2천만 원 미만 계층의 소득공제금액은 146만 원인데 비해 8천만 원~1억 원 계층은 268만 원, 1억 원 초과 계층은 276만 원으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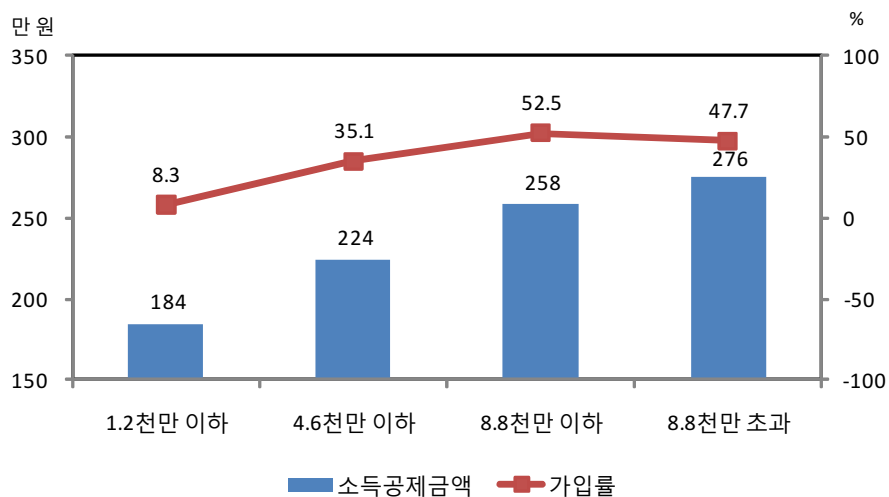
〈그림 2〉 근로소득금액별 소득공제금액(2009)



■ 과세표준 구간별 가입률과 소득공제금액 간 관계를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금액도 높아지고 가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과표 8천 8백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가입률과 소득공제금액이 동시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최고 과표 구간인 8천 8백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공제금액은 276만 원으로 높아지는데 비해 가입률은 47.7%로 하락함.

〈그림 3〉 과세표준 구간별 가입률과 소득공제금액(2009)



4. 낮은 가입률의 원인 : 상품 수익률과 세제혜택 유인 측면

신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수익률 측면에서 찾기는 어려움. 다만, 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계층은 실제 납부한 세액이 크지 않아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가입 동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자 기준 신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률(2009년)은 1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서는 낮은 수익률, 저소득 계층의 낮은 가입 유인 및 구매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가입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이 수익률 측면의 상품 경쟁력이 낮아서인지 규명하기 위해 과거 수익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08~2010년 신 개인연금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금융기관별·상품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익률 요인에 기인하여 가입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정이율 평균으로 산출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률은 각각 4.9%, 5.6%에 달하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채권형과 안정형의 평균 수익률도 각각 4.4%, 4.3% 수준으로 파악됨.
 -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채권형 4.8%, 채권혼합형 5.4%, 주식혼합형 7.9%, 주식형 11.7%로 추정됨.

〈표 9〉 신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금융기관별 · 상품유형별)

(단위 : %)

구 분		직전1년(2010) 평균	직전2년(2009~2010) 평균	직전3년(2008~2010) 평균
생명보험회사		4.8	5.2	4.9
손해보험회사		5.3	5.4	5.6
증권	채권형	4.6	3.8	4.8
	채권혼합	8.9	10.5	5.4
	주식혼합	13.8	21.9	7.9
	주식형	17.9	36.4	11.7
은행	채권형	3.5	3.4	4.4
	안정형	4.5	4.7	4.3
국고채 3년 수익률		3.7	3.9	4.3
회사채(AA-) 3년 수익률		4.7	5.2	5.8

주 : 1) 보험회사는 예정이율 평균

2) 증권은 누적수익률을 연평균으로 환산

3) 2010년 말 기준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의 평균 수익률

자료 : 각 협회 공시 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가입률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계층별 실제 납부한 세액 기준으로 가입 유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과세대상자 중 80.1%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4천만 원 미만 계층의 낮은 가입 유인과 구매력이 신 개인연금의 낮은 가입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2천만 원 미만 계층에서는 1인당 결정세액이 12만 원에 불과하여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절세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가입률도 4.3%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천만 원~4천만 원 계층에서는 결정세액이 78만 3천 원으로 높아지지만, 여전히 절대 금액이 크지 않아 신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 상품에 가입할 구매력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4천만 원 이상 계층에서는 결정세액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과 구매력 측면에서 가입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10〉 근로소득금액별 1인당 결정세액과 신 개인연금 가입률(2009)

(단위 : 천 원, 명, %)

구 분	1인당결정세액	대상 인원	인원 비중	신 개인연금 가입률
2천만 원 미만	120	4,484,287	52.7	4.3
2천만 원~4천만 원	783	2,332,317	27.4	25.2
4천만 원~6천만 원	2,650	1,090,162	12.8	45.3
6천만 원~8천만 원	5,558	373,804	4.4	57.0
8천만 원~1억 원	9,753	124,441	1.5	60.3
1억 원 초과	38,534	111,806	1.3	54.1
평균	1,509	8,516,817	100.0	19.0

자료 : 국세청(2010), 『국세통계연보』

5. 시사점

신 개인연금은 소득계층별로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 구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러한 측면을 파악하여 소득계층별로 시장을 세분한 후 각 계층에 부합하는 마케팅 프로세스와 판매채널을 구축해야 함. 정부에서도 저소득자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과 더불어 관련 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 등 시장 확대 및 정책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신 개인연금 상품의 세제혜택과 양호한 투자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험회사는 가입 유인이 존재하는 잠재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균 가입률이 19.0%로 낮게 나타난 것은 과세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천만 원 이하 계층에서는 신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향유할 니즈가 거의 없어 가입률이 4.3%에 불과하기 때문임.
- 성별·연령별 가입률보다 소득계층별 가입률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소득계층별로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납부 세액이 265만 원에 달해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구매력도 존재하지만, 가입률은 45.3%에 머문 4천만 원~6천만 원 이하 계층에 대한 잠재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2천만 원 이상 소득계층의 가입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 개인연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세스가 필요함⁷⁾.

- 일반 대중(mass market)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 확보, 이들의 판매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 지급 체계 등을 검토함.

■ 정부에서는 세제혜택 측면에서 가입 동기를 찾기 어려운 2천만 원~4천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유층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 상품의 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은 중저소득층에 집중하도록 함.
- 중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일정 수준(예 : 가입금액의 20%)을 보조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습득한 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기관이 정부의 역할을 보완(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주도의 정보제공과 소비자교육이 필요함.
- 다양한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익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리스크 수준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적인 공시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함.

7) Orszag(2010)

〈참 고 문 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국세청, 『2010 근로자와 세금』

금융위원회(2010.12.14),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상품공시자료

동부증권 리서치센터(2011.1.12), 『보험』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호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상품공시자료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상품공시자료

이순재 · 김현수(2009.8),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3호, pp.249-280.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상품공시자료

한국은행(www.bok.or.kr), 경제통계시스템

Orszag, J. Michael(2000), *Annuities: The Problems*, Presented at NAPF Annual Conference, May 11-12